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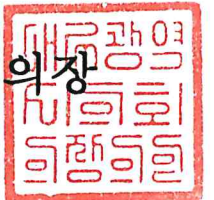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7호

주민조례 제정 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취지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가 있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1. 청구 조례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
2. 청구인의 대표자 : 이 보 미
3. 서명요청기간 : 2023.4.28. ~ 2023.10.00
4. 청구가능 서명인수 : 13,575명(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50)
5. 조례 제정 청구취지

○ 대구광역시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학급 담임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급식지도, 행정지원 등의 업무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 담임 업무에 따른 지원은 오랜기간 변동이 없어

교원들이 담임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대구시 교육청 차원에서 학급 담임 교원에게 연구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담임을 담당하는 교원을 보다 두텁게 우대하여 담임 기피 풍조를 덜고 학생 지도 등에 성과를 내게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함.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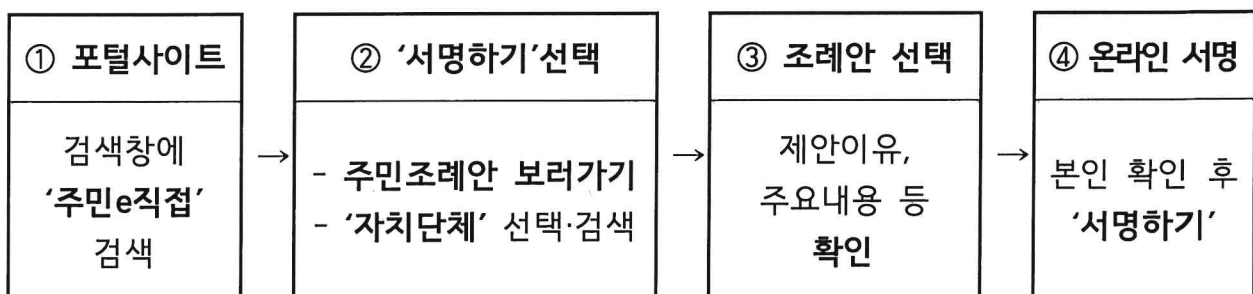
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의 학급담당교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급담당교원에게 지급되는 가산금의 80퍼센트 이상 12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교육연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지급일) 교육연구비용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지급일로 한다.

7. 전자서명절차 안내

○ 전자서명시스템 인터넷 주소: 주민e직접 www.juminegov.go.kr

○ PC 또는 모바일 서명 가능



○ 전자서명 취소 방법

- ①~③번 과정은 동일 → ④번 과정에서 '서명취소' 버튼 선택

8. 행정사항

-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053-803-51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